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4 선고 2021가단36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2. 4.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2018.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접수 제7605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소외 D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회원이다.

나. D는 2015년경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여 2018. 12. 4.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9. 3. 19.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차전32230 사건). D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21. 4. 13. 기준 19,346,678원에 이른다.

다. D의 아버지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이 2017. 12. 29.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와 자녀인 F, D, G(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 외에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D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이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 빌라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제1층 호 42.1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대 448㎡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448 분의 23.5

